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53526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2.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김민성, 김지슬, 윤석찬

원고2보조참가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김민성, 김지슬, 윤석찬

2. D

변론 종결2022. 11. 22.

판결 선고2023. 1. 10.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에 대한 소 및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2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원고 주식회사 A :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5,622,313원 및 그 중 4,411,694원에 대하여는 2021.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10,544,585원에 대하여는 2021.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2021. 1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12. 9. 접수 제60886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피고 C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는데, 2021. 12. 17. 현재 피고 C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입금하지 않은 사용대금은 아래와 같다.

할부	654,364	0	3,757,330	2,162	118,800	4,532,656	17%
CA	0	0	5,190,000	61,471	200,063	5,451,534	20%
RLS	3,954,173	58,334	1,400,412	181,985	36,353	5,631,257	20%
연회비/SMS	0	0	6,866	0	0	6,866	-
합계	4,608,537	58,334	10,354,608	245,618	355,216	15,622,313	

- 나. 피고 C은 2021. 12. 7.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 C은 2021. 10. 21. 청주지방법원 2021개회6656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2. 5. 1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 A의 이 사건 채권도

회생채권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 A는 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이 사건 채권의 존부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2022. 9. 28. 원고 A의 위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위 개인회생사건은 현재 폐지되거나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라. 한편 피고 C은 2022. 8. 4.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채권자취소 청구부분을 수계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 C에게 15,622,313원 및 그 중 14,956,27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2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확정될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법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C에 대한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피고 C은 원고 A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의기간 내에 원고 A의 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별도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이하 '원고 소송수계인'이라 한다)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소송수계인은 피고 D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A가 2021. 12. 24. 피고 D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22. 5. 17. 피고 C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 소송수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수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송수계인은 피고 D에 대한 청구취지를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소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4. 결론

다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연주

별지